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5. 2 선고 2020가단230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현우

변론 종결2023. 4. 4.

판결 선고2023. 5. 2.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9. 7. 3.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7. 3. 접수 제190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9. 7. 3.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238,701,0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8,701,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2019. 7. 3.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263,650,7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3,650,7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1. 'C은 원고에게 1억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위 법원 2019차355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8. 1. 확정되었다.

나. C은 2019. 7. 3. 피고와 'C의 피고에 대한 1,653,67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156,679,8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한다'라는 취지의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C의 채권자들이 C 대표자 D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한 2019. 7. 27. 이 사건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대표자 D이 2019. 7. 27. 피고 대표자 E과 통화하면서 '누가 왔다 간 사람이 있다', '법대로 한다 그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2019. 7. 27. 이 사건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2019차355 지급명령에 기하여 C에게 1억 2,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등 참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8. 'C은 F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위 법원 2019차196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7. 24. 확정된 사실, ② F는 2021. 6. 4.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차196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한 사실, ③ G는 2021. 8. 20.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차196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성립하였던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차196 지급명령에 기한 6,000만 원의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추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1억 8,100만 원(= 춘천지방법원 2019차355 지급명령 1억 2,1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차196 지급명령 6,000만 원)의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2. 8.

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2. 9. 2.자 사실조회결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적극재산: 357,391,550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9,246,000(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직전 거래 거래가액으로 본다).
2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 합계2) 구체적으로, 제2항 92,676,000원, 제3항 163,760,000원, 제4항 20,436,000원, 제5항 5,769,000원, 제6항 5,460,000원, 제7항 11,349,000원, 제8항 6,435,000원이다.	305,885,000
3	안동시 H 경량철골조 단층 사무실 129.6m ²	15,940,800
4	매출채권3) 그 밖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카명1414 재산명시사건 목록(갑 제1호증) 상 유체동산 등은 경미하여 제외한다.	26,319,750
합계	357,391,550	

② 소극재산: 775,124,142원

1	위 춘천지방법원 2019차355 지급명령 채무	121,000,000
2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차196 지급명령 채무	60,000,000
3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270,455,000
4	중소기업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 마이너스 잔액	129,999,1424) 2019. 7. 3. 기준이므로, 중소기업은행의 2022. 8. 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따라 -128,089,142원~1,910,000원.
5	피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관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21차전85 지급명령)	60,670,000
6	주식회사 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관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21차전87 지급명령)	133,000,000
합계	775,124,142	

그럼에도 C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그의 재산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범위

(1)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중소기업은행은 2003. 4. 16. 별지 목록 제2, 3, 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목록번호 제2003-71호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3. 11. 21. 그 목록을 별지 표와 같이 변경하였다('목록번호 및 피담보채무액' 란 부분에 '○' 표시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이하 같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추가로 2003. 11. 24. 별지 표와 같이 별지 목록 제2, 3, 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목록번호 제2003-240호로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추가로 2004. 2. 3. 별지 표와 같이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목록번호 제2004-15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④ 중소기업은행이 2019.경 위 공동근저당권들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⑤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21. 4. 30. 매각이 이루어져 주식회사 K가 2021. 5. 3.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⑥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7. 3. 접수 제1904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은 같은 날 주식회사 I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7. 3. 접수 제19042호로 채권최고액 1,462,192,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25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대물변제 전에 중소기업은행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책임재산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으므로, 238,701,031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에 앞서 채권최고액 1,462,192,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I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보다

접수번호가 앞서는 채권최고액 1,462,192,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위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당시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1,462,192,000원 $\approx$ 1,496,990,200원(=위 기초사실에서 본 1,653,670,000원 - 156,679,800원)]이고, 위 1,653,670,000원은 피고, E 및 주식회사 I 등이 D, C,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등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수많은 채권을 망라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피고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는 E이었던 점(현재도 마찬가지이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과 주식회사 I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날이 2019. 7. 3.로 같고, 그 접수번호도 연속되는 점(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번호는 제19042호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번호는 제19043호이다), ④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에 앞서 법률행위로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먼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462,192,000원인 주식회사 I의 근저당권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대물변제에 앞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의사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유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성립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대표자 E은 2018. 4. 19. C 대표자 D에게 C 주식 10만 주와 함께 경영권을 양도한 점, ② 위 경영권양도 이후에 E이 C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E이 운영하던 피고나 주식회사 I을 통하여 피고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였던 점, ③ E과 D은 이 사건

대물변제 무렵인 2019 6. 22.경 통화하면서 '지금 막으려는 어음이 얼마야?', '그걸 어떻게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막아?'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거나, 2019. 6. 29.경 통화하면서 C의 어음발행현황을 파악하거나 법정관리를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거나 'N이하고 0이 돈은 일부를 떼어 먹을 생각을 해야 돼', '7. 5. M 어음을 못 막으면 최종 부도가 나는 거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점, ④ C은 2019. 7. 1.경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피고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채권자로서 정상적으로 변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대물변제가 C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선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E이 이 사건 대물변제 무렵 C의 경영에 관여해 온 점, E이 이 사건 대물변제 무렵 C 대표자 D과 C의 자금상황, 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및 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거부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61,908,602원[=121,000,000원6) + (121,000,000원 × 1,357일(2019. 7.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4. 4.까지)/365일 × 연 12%) + 60,000,000원7) + {60,000,000원 × 1,365일(2019. 7.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4. 4.까지)/365일 × 연 12%}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시가가 9,246,000원인 사실,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별지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부동산의 책임재산 합계액이 238,701,03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238,701,031원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7. 3. 접수 제190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238,701,0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8,701,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배다헌

별지

-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직전 거래 거래가액으로 본다.
- 2) 구체적으로, 제2항 92,676,000원, 제3항 163,760,000원, 제4항 20,436,000원, 제5항

5,769,000원, 제6항 5,460,000원, 제7항 11,349,000원, 제8항 6,435,000원이다.

3) 그 밖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카명1414 재산명시사건 목록(갑 제1호증) 상 유체동산 등은 경미하여 제외한다.

4) 2019. 7. 3. 기준이므로, 중소기업은행의 2022. 8. 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따라 -128,089,142원~1,910,000원.

5) 피고 스스로 이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의 2021. 4. 2.자 준비서면 참조.

6) 위 춘천지방법원 2019차355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원금.

7)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차196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원금.